

■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1. 12. 16.>

안전검사의 기준(제14조제2항관련)

1. 송유관시설

대 상 시 설	검 사 기 준
가. 배관	별표 2 제2호 마목, 바목(1), 사목(2), 아목, 카목, 파목(2)(나)(교량설치배관에 한함), 하목 및 거목(노출배관에 한함)
나. 안전설비	
(1) 운전상태감시장치 등	별표 2 제3호 가목
(2) 압력안전장치	별표 2 제3호 나목(1)
(3) 누유검지장치 등	별표 2 제3호 다목
(4) 긴급차단밸브	별표 2 제3호 라목(2) 내지 (4)
(5) 안전제어장치	별표 2 제3호 마목
(6) 표지판 등	별표 2 제3호 사목(1)
(7) 비상전력	별표 2 제3호 아목
(8) 안전용 접지절연	별표 2 제3호 자목
(9) 순회감시차 등	별표 2 제3호 차목
(10) 지진계측기기	별표 2 제3호 카목

2.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

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송유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는 송유관설치자 등이 제출한 시설관리계획서에 따라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.